

2024. 2. 7.(수) 10:30

# 2월 이장회의 자료

이 회의서류는 전 면민이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전 면민이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곡 면

# - 목 차 -

	총무팀	
1.	2024년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안내1	
2.	2024년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안내1	
3.	의령군 재활용품 보상·교환 사업 안내 ·······2	
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 운동 금지 재안내2	
	산업팀	
1.	2024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비대면 신청 안내3	
2.	2024년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안내3	
3.	2024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신청 안내4	
4.	각종 신청기간 안내4	
5.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홍보 협조4	
6.	설 명절 대비 고병원성 AI, ASF등 방역을 위한 마을방송4	
	민원복지팀	
1.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 안내5	
2.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 실시 안내	
3.	인구증가시책 추진 적극 홍보	6
< 들	를 임 >	
		0
	의령군민 안전공제 혜택 안내	ช
	산불예방 방송문(안) 9	
	가축전염병 마을 방송(안) 10	
4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혜택	L

## 【총무팀】

#### 1. 2024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신청 안내 [최성욱 570-4862]

- O 지원대상
- 저소득층 수급자격(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또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대상자 중 중위소득 70%이하 가구 학생

가 구 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월소득인정액	1,599,912	2,577,826	3,300,826	4,010,939	4,687,015	5,332,858

- O 신 청 인: 학생의 법률상, 사실상 보호자로서 도내에 주소를 둔 자
- 신청기간: 2024. 2. 13. ~ 5. 31.
- 사용기간: 2024. 2. 13. ~ 11. 30.
- O 신청방법: 면사무소 또는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www.gnedu.kr)
- 신청서류: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신청서 및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서 ※ 2023년 대상자 중 현재('24. 1. 30.) 기준 중위소득 70이하는 미제출
- 지원내용: 1인당 연간 10만원 상당의 교육지원카드 지급
  - 의령군 내 가맹정: 의령읍(일육서점, 아트프라자) 부림면(부평상회, 신반문구사)

#### 2. 2024년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신정섭 570-4863]

- O 피공제자: 의령군민(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
- 보장기간: 2024. 1. 15. ~ 2025. 1. 14.
- O 공제회비: 의령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O 가입절차: 의령군민 전체 자동가입
- 2024년 추가 및 한도상향 항목
  - 추가항목(5개): 유독성물질사망,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개물림사고 상해 후유장해,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 한도상향 항목(4개): 사회재난 사망, 자전거 상해사망,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강력범죄 상해보상금
- ※ [붙임1] 혜택안내문 참조

#### 3. 의령군 재활용품 보상 · 교환 사업 안내 [신정섭 570-4863]

O 추진기간: 연중 상시

O 사업내용: 폐건전지, 종이팩을 종량제봉투로 교환

O 세부내용

- 교환장소: 유곡면사무소 총무담당

- 교환요일: 매주 금요일 09:00~12:00

- 교환기준: 크기에 상관없이 25개 또는 0.5kg 당 종량제봉투 20L 2장

### 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선거 운동 금지 재안내 [최성육 570-4862]

○ 주요내용: 「공직선거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이장, 반장, 주민자치회 위원 등은 오는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음

### [산업팀]

#### 1. 2024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비대면 신청 안내 [김진희 570-4872]

- 신청기간: 2024. 2. 1. ~ 2. 29.(1개월간)
  - 대상자: 전년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없는 농업인
  - 신청방법: 안내문자 확인 후 유선(☎1334) 또는 온라인
  - 제출서류: 없음
- 협조사항: 비대면 신청 가능 문자 받으신 농업인에게 적극 홍보 및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면소 방문 안내
  - ※ 방문신청 대상자는 3월에 별도 안내 및 마을별 신청서 배부 예정
  - ※ 등록사항 변경이 있는 농업인은 2월 중 농관원(570-6200) 변경신고 必

#### 2. 2024년 전략작물직물제 신청 안내 [김진희 570-4872]

- 신청기간
  - 동계작물: 2024. 3. 29.(금)까지
  - 하계작물: 2024. 5. 31.(금)까지
- O 접수장소: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 읍·면사무소
- O 대상품목
  - 동계작물: 밀, 보리(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등), 호밀, 귀리 조사료 등
  - 하계작물: 가루쌀, 두류, 옥수수, 조사료
- 신청대상: 작기별로 논 1,000㎡ 이상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배
- O 참고사항
  - 개인별 신청서는 2월 중 별도 배부 예정
  - 재배품목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농관원에 먼저 변경등록 신고
  - 실제 경작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
  - ※ 점검기간: 동계작물 4~5월, 하계작물 8~10월(농관원)

#### 3. 2024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신청 안내 [김진희 570-4872]

- 신청기간: 2024. 2. 1. ~ 2024. 5. 31.
- 접수장소: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 읍·면사무소
- O 대상농지
  - 2023년 벼 재배한 농지 중 2024년 신규 타작물 경작 전환 농지
  - 2023년에 신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대상 농지 예시) 2023년 신규 콩 재배농지(대상), 2022년부터 콩 계속 재배필지(불가)
- 대상품목: 벼 이외의 다른작물을 재배 또는 휴경
- 지원요건: 농업인당 최소 1,000㎡이상 신청 ※ 전략작물 직불제와 논 타작물 재배 지원과 품목에 따라 중복신청 가능 ○ 지원단가 (단위: 만원/ha)

일반작물	풋거름작물	휴경	옥수수	가루쌀	두류	하계조사료
150	150	150	50	50	50	50

#### 4. **각종 신청기간 안내** [김진희 570-4872]

- 고구마 종순(소담미·진율미·호감미·호풍미) 신청기한: 2024. 2. 23.(금)
-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한 및 가입장소: 2024. 2. 29. / 지역농협
- 콩(선풍, 대원) 보급종 신청기한: 2024. 3. 6.(수)

#### 5.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운영 홍보 협조 [이혜진 570-4873]

- 산불조심기간: 2024. 2. 1. ~ 2024. 5. 15.(105일)
- 산불감시운영: 6명(기동1, 일반5)
- O 협조사항
  - 마을방송을 통해 산불조심 홍보 방송 [붙임2] 참조
  - 산불조심기간 동안 불법 소각행위 계도·단속에 협조 (생활쓰레기,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집중 단속)
  - 산불감시원 출근 전, 퇴근 후 소각 행위 금지
  - 산불 또는 소각행위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 570 4871~4873)

#### 6. 설명절 내비 고병원성 AI, ASF 등 방역을 위한 미율방송 협조 [이혜진 570-4873]

- 방송기간: 2024. 2. 7.(수) ~ 2. 12.(월)
- O 방송횟수: 1일 2회
- O 방송문안: [붙임3] 참조

### [ 민 원 복 지 팀 ]

#### 1.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 안내 [여양모 570-4883]

O 사업내용: 마산 예일이비인후과 보청기 기부에 따른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의령군 총 2대)

○ 선정기준: 저소득(중위소득 75%이하) 65세 이상 어르신

O 제외대상: 청각장애인(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및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O 협조사항: 소득 낮은 순 및 독거노인 등 우선순위 여부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되며, 각 마을 저소득 난청 어르신 신청 홍보 요청

#### 2. 고독사 위험· 장· 노년층 1인 기구 실태조사 실시 안내 [여양모 570-4883]

O 조사기간: 2024년 2월 ~ 4월

○ 조사대상: 만 50세 이상(1974년생) 1인 단독 가구

O 조사내용: 1인가구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등

O 조사방법: 조사자 가정방문 및 유선조사

O 협조사항: 마을별 1인 단독가구 실태조사 안내, 실거주 여부 확인, 위기가구 등 발굴 협조

#### 3. 인구증가시책 추진 적극 홍보 [한두향 570-4882]

O 기 간: 연중

O 인구현황 (단위: 명)

2023.1.31.		2024.1.31.		전년대비	비고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인구증감	미끄
730	1,126	721	1,107	▲19	

#### O 지원내용

-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 ▶ 산후조리비용 지원: 산후조리원 비용의 50%(최대 100만원)
- ▶ 출산장려금 지원
- \* 첫째 400만원, 둘째 600만원, 셋째이상 1,300만원
- ▶ 셋째아 이상 영유아 양육수당: 월30만원

#### - 출산장려금 및 전입지원금 지급금액 및 지급방법(분할지급) 안내

구 분	지 원 내 용		
	▶ 첫째아(400), 둘째아(600), 셋째아 이상(1,300)		
	<지급방법> 1년~5년 분할 지급		
1 초시기자기케키이	<b>첫째:</b> 출생 후(200), 6개월(100), 12개월(100)		
1. 출산장려시책지원	<b>둘째:</b> 출생 후(200), 6개월(100), 12개월(100), 24개월(100), 36개월(100)		
	<b>셋째:</b> 출생 후(200), 6개월(100), 12개월(100), 18개월(100), 24개월(200),		
	36개월(200), 48개월(200), 60개월(200)		
	▶ 1인(20), 2인(50), 3인(70), 4인이상(100)		
	<지급방법> 1년~2년 분할지급		
0 기이게레기카카기이	<b>1인:</b> 6개월 후(10), 12개월 후(10)		
2. 전입세대정착지원	2인: 6개월 후(30), 12개월 후(20)		
	3인: 6개월 후(30), 12개월 후(20), 18개월 후(20)		
	<b>4인이상:</b> 6개월 후(40), 12개월 후(30), 24개월 후(30)		

※ 상세 내용은 [붙임4] 안내문 참고

#### O 협조사항

- 실거주 관외 주소자 수시 발굴 및 전입유도
- 인구증가시책 지원혜택 주민 홍보

## 붙임1 의령군민 군민(시민)안전공제 혜택 안내

### ◈ 공제가입 혜택

담 보 명	보 장 내 용	공제기입(보장)금액
자연재해 상해사망	의령군민이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의령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의령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의령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의령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의령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의령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강도상해 사망	의령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의령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익사사고 사망	의령군민이 익사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의료사고 법률지원	의령군민이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일당	의령군민(청소년 만13세~만18세)이 국내에서 타인에 의해 유괴- 납치·불법감금으로 억류상태에 있을 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72시간이 경과 한 시점까지 구출되지 않은 경우	1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령군민(만12세 이하)이 공제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만원 (부상등급 1급~5급)
미아찾기 지원금	의령군민(만8세 이하의 어린이)이 미아 상태가 되어 행정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미아 상태가 계속된 경우	100만원
의사상자상해 보상금	의령군민이 직무 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1,000만원
성폭력범죄피해 보상금	의령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300만원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의령군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경우	1,000만원
강력범죄상해	의령군민이 강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 을 초과하여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500만원
농기계상해 사망	의령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의령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가스상해위험사망	의령군민이 가스의 누출사고, 누출로인한 폭발·화재사고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가스상해위험휴유장해	의령군민이 가스의 누출사고, 누출로인한 폭발·화재사고의 결과로 상해 휴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담 보 명	보 장 내 용	공제기입(보장)금액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의령군민이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의령군민이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1,000만원
유독성 물질 사망	의령군민이 유독성물질에 의해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의령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의령군민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100만원
물놀이사망	의령군민이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500만원
헌혈후유증보상금	의령군민이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 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 "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 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100만원
자전거상해 사망	의령군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의령군민이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화상 수술비	의령군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때	1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의령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의령군민(만 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온열질환진단비	의령군민이 열사병, 열실신,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사망	의령군민이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의령군민이 개인형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사회재난사망	의령군민이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감염병제외)	2,000만원
개물림사고 상해사망	의령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물림사고 상해후유장해	의령군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 상해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자연재해 상해후유장해	의령군민이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으로 인하여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의령군민이 사회재난으로 인해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의령군민 개인보험 및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 공제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문의
  - 1. 공통서류 : 공제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 2. 기타서류 : 상담창구에 문의 바랍니다.
    - ※ 공제금청구서식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www.lofa.or.kr→[정보마당]→[규정및서식]→[사업별공제서식]-[시민안전공제(청구서양식)]
- 사고처리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 (☎1577-5939)

#### 산불예방 방송문(안)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령군에서는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합니다.

우리지역 산불은 대부분이 주민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은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사오니,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토지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영농부산물 등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입산통제구역이나 통행이 제한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 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화기나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산림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하여는 고의나 실수를 불문하고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방화범은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겠습니다.

※ 과실로 산림을 태운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울러,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주민 여러 분의 자발적인 산불예방과 감시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불예방을 위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붙임3 가축전염병 마을방송(안)

### 가축전염병 마을방송(안)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귀성객 여러분의 교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우리 동네를 AI, 구제역, ASF 등 가축 질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방
역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방문하실
경우 소독 시설에서 소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 질병 방역을 위해 마을주민 및 귀성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귀성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붙임4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혜택

### □ 전입세대 정착 지원 소멸위기대응추진단 인구위기대응담당 ☎ 570-2923

지원분야	지원내용	적용기준	담당부서
전입지원금 (분할지급)	<ul> <li>1인 20만원</li> <li>6개월 10만원, 12개월 10만원</li> <li>2인 50만원</li> <li>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li> <li>3인 70만원</li> <li>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18개월 20만원</li> <li>4인 이상 100만원</li> <li>6개월 40만원, 12개월 30만원, 24개월 30만원</li> </ul>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세대 (전입 최초 1회 한정)	소멸위기대응 추진단
국적취득자 지원금	• 1인 100만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소멸위기대응 추진단
주민세	· 전입 세대 당 1년간 지원 (주민세 부과액 기준: 11,000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세대	소멸위기대응 추진단
쓰레기봉투	· 전입자 1인당 매월 20리터 1매 (6개월간)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세대	소멸위기대응 추진단
공공시설 이용 우대	·국민체육센터 : 이용료 50%할인 ·군민문화회관 : 이용료 20%할인 ·벽계관광지 : 이용료 무료	전입지원금 대상이거나 출산장려 지원 대상 중 3자녀 이상 출산한 가정 (전입 최초 1회 한정)	문 화 관 광 과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 전입 시 희망자 대당 4만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세대 지역번호판 소지자 중 희망자	소멸위기대응 추진단
전입군인 휴가비	• 2회 20만원 (단, 전역 시까지 1년 1회 10만원) ※ 간부 군인 제외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복무를 위하여 군내로 전입신고한 군인(의무경찰포함)	소멸위기대응 추진단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 1회에 한하여 1인 30만원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입신고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면 군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소멸위기대응 추진단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지원 (연 1회, 최장 5년간)	부부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신혼 부부(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기관에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소멸위기대응 추진단

# Memo


